

행복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5678서울도시철도



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

수신자 경영감사처장
(경유)

제목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례 제출

1. 경영감사처-1297('17.04.10.) 『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및 체감변화 우수사례 제출』 과 관련입니다.

2. 위 호와 관련,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건축처에서 자율 운영중인 제도개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 임 :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사례(건축처) 1부. 끝.

건축처장명준

사원 김혜상

부장 정천구

처장 04/11
박병준

협조자

시행 건축처-1164 (2017.04.11.)

접수

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/http://www.smrt.co.kr

전화 02-6311-2574 전송 02-6311-4284 / 2140036@smrt.co.kr / 대시민공개

부패 '0'의 공기업!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. 인사 이권청탁 배격